

의안번호	2213693
의 퇴 인	김정재의원
회 답 일	2025.12.3.
추계번호	25D5680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하는 경우 재정수입 감소액이 2027년 52억 6,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63억 2,6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5,265	5,265	5,265	5,265	5,265	26,326	5,265

주: 본 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정면세점의 관광객 1인당 면제·환급액 등을 준용하고, 최근 울릉도 관광객 수가 추계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해당 섬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국토외곽 면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토외곽 면 섬에 지정면세점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토외곽 면 섬 중 관광객 수와 인구가 가장 많은 울릉도에 지정면세점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설치된 면세점¹⁾이 유일하며 동법에 근거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운영 중임
 - [참고자료] 국토외곽 면 섬 현황
-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토외곽 면섬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 또는 환급되는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 1인당 면제·환급액을 준용하고, 이를 울릉도 관광객 수에 대입하여 감소하게 될 재정수입을 추계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 략)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다.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 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항목에서 제주도 여행객의 지정면세점 이용에 따른 조세지출 총액을 별도 산정
- 울릉도 공항이 2028년 개항 예정으로 교통시간 단축 및 이동편의 증가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관광객 증가 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3년간 평균 울릉도 관광객 수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울릉도 관광객 중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제주도 관광객의 지정면세점 이용비율(30.0%)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울릉도 관광객 중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인원 1인당 면제 및 환급액을 곱하여 산출
- 최근 3년간 평균 울릉도 관광객 수는 연간 416,700명으로 제주도 관광객의 지정면세점 이용 비율 30.0%를 적용하면 연간 125,010명이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

[표 2] 최근 3년간 울릉도 관광객 수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울릉도 관광객 수	461,375	408,204	380,522	416,700

자료: 울릉군청 홈페이지

[표 3]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관광객 수 (만명, a)	1,568	1,471	1,426	1,488
지정면세점 이용객 수 (만명, b)	528	437	379	448
지정면세점 이용률 (b/a)	33.7%	29.7%	26.6%	30.0%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객 중 지정면세점 이용자의 1인당 면제·환급액은 최근 3년간 평균 41,850원임

[표 4]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 지정면세점 매출 및 면제·환급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객 수 (만명, a)	528	437	379	448
총 면제·환급액 (억원, b)	2,268 (부가가치세 685, 개별소비세 212, 주세 1,054, 교육세 316)	1,943 (부가가치세 548, 개별소비세 208, 주세 913, 교육세 274)	1,446 (부가가치세 259, 개별소비세 143, 주세 803, 교육세 241)	1,886
1인당 면제·환급액 (원, b/a)	42,950	44,460	38,150	41,850

주: 총 면제·환급액은 각 연도 조세지출 중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조세지출 내역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출자료 및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하는 경우 재정수입 감소가 2027년 52억 6,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63억 2,6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정면세점 이용객 수 (명, a)	125,010	125,010	125,010	125,010	125,010	—
1인당 면제·환급액 (원, b)	41,850	41,850	41,850	41,850	41,850	—
합 계 (백만원, a×b)	5,265	5,265	5,265	5,265	5,265	26,326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정면세점의 관광객 1인당 면제·환급액 등을 준용하고, 최근 울릉도 관광객 수가 추계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국토외곽 먼 섬 현황(43개, 2024.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4,875
2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1,201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221
4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1,981
5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104
6	충청남도	보령시	황도	2
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청도	262
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왕등도	50
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왕등도	22
10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485
11	전라남도	여수시	서도	596
12	전라남도	여수시	동도	246
13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180
14	전라남도	영광군	대석만도	11
15	전라남도	영광군	죽도	4
16	전라남도	영광군	횡도	3
17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100
18	전라남도	진도군	동거차도	119
19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	98
20	전라남도	진도군	상하죽도	12
21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도	93
22	전라남도	진도군	죽도(조도면)	39
23	전라남도	진도군	곽도	21
24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1,719
25	전라남도	신안군	장도	80
26	전라남도	신안군	영산도	50
27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439
28	전라남도	신안군	대둔도	279
29	전라남도	신안군	상태도	69
30	전라남도	신안군	중태도	11
31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	116
32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386
33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70
34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	194
3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9,042
36	경상북도	울릉군	죽도	1
37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34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추자도	922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635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140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	1,618
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	216
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89

자료: 행정안전부